

일본국 헌법 제9조에 대하여

법학관 헌법연구소장 이토 마코토

일본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9조

-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쟁으로 초래된 비참한 경험을 반성하고 전쟁 포기를 규정하는 헌법은 일본 이외의 국가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체의 전쟁과 무력 행사·무력에 의한 위협을 포기하고 이를 위하여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며 교전권을 부인하는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매우 특징적인 규정입니다.

제9조 제1항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의 전쟁, 즉 침략전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의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 결과, 자위를 위한 전쟁을 포함하여 일체의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독립국가인 이상 '자위권'은 가지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수단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공격하여 자신을 지킨다고 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증오를 남길 뿐, 본질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무력에 의하지 않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언한 것이 제9조이며, 이러한 시도는 인류 최초의 장대한 실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력'의 의미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는 실력'을 말한다고 하며, 자위대는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헌법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및 군대에 대해서는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전쟁이 아닌 침략적 전쟁만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전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전포고를 하여 전쟁을 수행하거나 다른 나라들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헌장 또한 제51조에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국제연합헌장도 타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유하고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국 헌법은 모든

전쟁과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S.)